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31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 송언석·태영호·김정재

정진석 · 김석기 · 박성민

임이자 • 박덕흠 • 권명호

윤재옥 • 이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저연령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는 자 너가 감염병에 걸릴 경우에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별도의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사업주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청구한 한부모가 족인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 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 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5를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① 사업주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양육하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자녀를 포함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유급휴가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5(한부모가족의 자녀 돌
	봄을 위한 휴가) ① 사업주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
	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
	하는 근로자가 양육하는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
	함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한 휴
	가를 신청하면 연간 5일의 범
	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2조의5(일·가정 양립 지원 기	<u>제22조의6(일·가정 양립 지원 기</u>
반 조성) (생 략)	반 조성) (현행 제22조의5와 같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2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③ • ④ (생 략)

-	-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1. ~ 8. (현행과 같음)
- 9.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을 위
 한 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거
 나 유급휴가로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④ (현행과 같음)